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6471(본소), 2020가합6488(반소) 판결 [인건비
및 장비사용대금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121(본소), 2021나20138(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647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전택윤

변론 종결2021. 6. 3.

판결 선고2021. 7.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6,587,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8,95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진행하던 공사 내역

- 1) 피고[변경전 상호 (주)C]는 2017. 3. 1. D(주)로부터 공사기간 2017. 3.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80,75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게 되는 공사를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 이후 2017. 2. 22.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25.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1,404,356,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주)는 2018. 3. 25. 재차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8. 4. 10.까지로 늘리는 한편, 계약금액을 1,373,2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피고는 2017. 6. 22. F(주)로부터 공사기간 2017. 6. 26.부터 2017. 9. 23.까지로 하여 '이천 G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14개동)'을 계약금액 1,242,615,2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게 되는 공사를 '이 사건 이천시 공사'라 한다), 2017. 9. 22. 위 이천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F(주)는 2017. 10. 18. 재차 위 이천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계약금액을 1,239,924,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8. H(주)로부터 공사기간 2018. 2. 15.부터 2018. 9. 30.까지로 하여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1,001,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게 되는 공사를 '이 사건 I 공사'라 하고, 위 E, 이천시, I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2018. 9. 19. 공사기간을 2019. 1. 15.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1,010,57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시공참여약정 체결

1) 원고는 'J'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E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E 공사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참여자 약정하도급계약서

전문건설업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참여자(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제29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공참여자로 약정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명: E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강서구 K(E 외 2필지)
3. 공사기간: 2017년 4월 1.일~ 2017년 11월 30.일
4. 계약금액: 215,950,000원(VAT 별도) 1234(py)*175,000원
5. 결제조건: D 기성지급일정에 따라 지급함.
6. 대금지급: ①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C 기성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노무비 지급방법: 개인별 통장지급,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④ 기타지급방법: 월 마감후 1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3월 8.일

전문건설업자("갑") 피고

시공참여자("을") 원고

특약사항

1. "갑"과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제29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임을 상호 인정한다.
3. 공사 중 시공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공정진행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약정내역 및 단가는 "을"이 충분히 검토하여 "갑"과 약정하였기에 "을"은 임의로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 시에는 "을"의 기성금에 대하여 "갑"측이 유보하여도 "을"은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공법변경 등이 발생 시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 시공토록 하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정산시 반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이천시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천시 공사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 중 ① 참여기간 '2017. 7. 1. ~ 2017. 9. 30.', ② 약정금액 '213,220,000원[140,000*1,523(평)]', ③ 대급의 지급 '기성부분금 월 1회, 현장에서 물량 확인 후 월말 기성 청구, 익월 말일까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위 1)항 기재와 동일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I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I 공사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 중 ① 참여기간 '2018. 2. 15. ~ 2018. 9. 30.', ② 약정금액 '195,000,000원[130,000*1,500(평)]', ③ 대급의 지급 '기성부분금 월 1회, 현장에서 물량 확인 후 월말 기성 청구, 익월 말일까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위 1)항 기재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은 공사 전체에 대하여 대금 총액을 정한 총액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대와 노무비를 정산서를 통하여 매달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직접 실비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수정하여 제출한 정산서(을 제6호증)와 이체내역(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E 공사를 완료하였던 2018. 4. 30. 기준으로 위 E 공사 정산서에 기재된 장비대 합계는 43,280,000원이고, 노무비 합계는 251,924,760원인데, 원고는 장비대 명목으로 34,100,000원, 노무비 명목으로 245,445,1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E 공사 현장과 관련된 미지급 대금은 15,659,650원[= (43,280,000원 - 34,100,000원) + (251,924,760원 - 245,445,110원)]이다.

또한 이 사건 이천시 공사를 완료하였던 2017. 9. 30. 기준으로 위 이천시 공사 정산서에 기재된 장비대 합계는 25,600,000원이고, 노무비 합계는 228,166,000원인데, 원고는 장비대 명목으로 6,710,000원, 노무비 명목으로 218,386,63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이천시 공사현장과 관련된 미지급 대금은 28,669,370원[= (25,600,000원 - 6,710,000원) + (228,166,000원 -

218,386,630원)]이다. 이 사건 I 공사를 완료하였던 2019. 4. 30. 기준으로 위 I 공사 정산서에 기재된 장비대 합계는 22,300,000원이고, 노무비 합계는 143,730,000원인데, 원고가 장비대 명목으로 13,310,000원, 노무비 명목으로 110,462,0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I 공사현장과 관련된 미지급 대금은 42,257,990원[= (22,300,000원 - 13,310,000원) + (143,730,000원 - 110,462,0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으로서 86,587,010원(= 15,659,650원 + 28,669,370원 + 42,25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반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E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17. 5. 31.부터 2018. 5. 14.까지 원고의 계좌로 장비대와 원고 외 인부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302,042,190원을, 이 사건 이천시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17. 9. 6.부터 2018. 3. 20.까지 원고의 계좌로 198,467,970원을, 이 사건 I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18. 5. 10.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의 계좌로 150,233,590원을 각 지급하였고(을 제5호증), ②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업체 등에 2017. 6. 30.부터 2018. 3. 20.까지

입금한 133,329,445원 중 이 사건 E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54,722,900원(을 제6호증의 1)에 해당하고, 2017. 9. 6.부터 2018. 1. 1.까지 거래업체 등에 대하여 입금한 129,870,835원 중 이 사건 이천시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25,161,100원(을 제6호증의 2)이며, 2018. 4. 3.부터 2018. 12. 31.까지 거래업체 등에 대하여 입금한 78,382,090원 중 이 사건 I공사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25,199,000원(을 제6호증의 3)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650,743,750원(= 302,042,190원 + 198,467,970원 + 150,233,590원)과 거래업체에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105,083,000원(= 54,722,900원 + 25,161,100원 + 25,199,000원)이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소속 인부들의 보험료 17,298,400원도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총 지출한 돈은 773,125,150원(= 650,743,750원 + 105,083,000원 + 17,298,4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624,170,000원(= 215,950,000원 + 213,220,000원 + 195,000,000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955,150원(= 773,125,150원 - 624,17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초과 지급받은 돈 148,95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서의 내용과는 상관 없이 원고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와 장비대의 실비정산 과정을 거쳐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시공수량의 정산은

갑과 을이 체결한 내역을 근거로 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와 장비대를 실비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㉔ 또한, 피고가 매달 발급해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정산서에도 공사금액과 평당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서를 건네줄 때마다 해당 월에 정산된 금액을 공사대금 총액과 비교하여 그 공정율을 계산하여 기재하였던 점, ㉕ 정산서 하단에 계약조건으로서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잡자재, 경비 포함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소요된 장비대와 노무비만을 계산하여 모두 지급한다는 실비정산의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㉖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반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통하여 총액이 정해졌음을 전제로 대금 증액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서를 통하여 실비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은 공사비 총액을 정한 총액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 기간은 원도급인 D(주)와의 변경계약에 따라 2017. 3. 2.부터 2017. 12. 31.이었던 공사 기간이 2017. 3. 2.부터 2018. 3. 25.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7. 3. 2.부터 2018. 4. 10.까지로 다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E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E 공사가 마지막 정산서가 작성된 2018. 4. 30.까지 진행되었음은 달리 다투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E 공사계약서가 이 사건 E 공사현장의 실제 운영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I 공사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인 D(주)와의 공사대금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1,280,750,000원에서 1,404,356,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1,373,200,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D(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시공 참여 형태로 관여한 점, 공사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장비대와 노무비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5개월이 늘어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원도급인 D(주)와 피고 사이에 공사 기간 및 공사대금의 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필연적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대금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사이에 대금 증액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E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㉕ 또한, 이 사건 E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1. 30.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정산서상 약정 공사금액 '215,950,000원'(또는 '20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의 없이 노무비, 장비대,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여 왔던 점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②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정산서(을 제6호증 및 2020. 10.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수정 기재한 부분)는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는 노무비와 장비대,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식대, 자재비 등을 합산하여 공정율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I 공사 관련 정산서에 의하면, 2018. 9.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비(공정율에 반영된 대금이 아니라 위 대금에서 대납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난 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는 2018. 9.에 410,740원, 2018. 10.에 410,740원, 2018. 11.에 1,884,380원, 2018. 12.에 0원, 2019. 1.에 0원, 2019. 2.에 420,000원, 2019. 3.에 8,910,000원, 2019. 4.에 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또한 이를 달리 다투지 않음에도 2019. 3.분을 제외하고 위 각 돈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8. 9. 이후 이 사건 I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되, 당초 총액으로 정해진 공사대금에 맞추어 공정율만 높임으로써 공사가 완료된 2019. 4. 30.에는 약정된 공사금액의 98%가 지급되었다고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E, 이천시, I 공사는 그 공사 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어서 일부 초과 지급된 돈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충당하여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언

판사이승민

판사손고은